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드합○○○○ 이혼 및 위자료
원 고 이AA

피 고 1. 류BB
2. 김CC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 류BB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류B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CC는 피고 류BB과 각자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류BB은 100,000,000원, 피고 김CC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류BB은 1980. 3.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 류Q(19생)을 두었다.

나. 피고 류BB은 2010. 5.경 피고 김CC를 알게 되어 위 피고와 2010. 6. 18.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2012. 8. 7.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2년 이상 교제하면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고 김CC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김CC는 2012. 2.경부터 피고 류BB에게, '원고에게 외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행동을 하였고, 2012. 5. 19.경 피고 류BB 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는데 피고 류BB은 그 일로 피고 김CC와 크게 싸우고 그 무렵 원고에게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

라. 피고 류BB이 2012. 6. 27.경 피고 김C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 김CC는 2012. 7.경 피고 류BB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류BB은 피고 김CC와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서 피고 김CC에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돈은 성행위 1회당 100만 원씩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 김CC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으며, 피고들은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2012. 7. 30., 2012. 7. 31. 및 2012. 8. 7.경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고 김CC는 2012. 10. 12.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피고 류BB과 서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메시지 5개를 전송하였는데 그 속에는 위 라.항 기재 대화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서로 주고받은 음담패설이 담겨있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호로 기소되어 2014. 2. 21. '2012. 5. 8.자 및 2012. 7. 30., 2012. 7. 31., 2012. 8. 7.자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피고 류B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김CC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 류BB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1, 2, 제6, 8~10, 1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류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나. 위자료 청구 :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인정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류BB은 2012. 5.경부터 2년 가까이 각 방을 써온 점, 원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 류BB은 이혼을 원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이혼을 고수하겠다는 그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태도인 점, 원고가 피고 류BB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원고와 피고 류BB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류BB에게 있음

피고 류BB은 피고 김CC와 2년 이상 교제하며 원고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2012. 8.경까지도 간통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류BB에게 있음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류BB의 혼인 지속 기간, 원고와 피고 류BB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참작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류BB은 이혼하고, 피고 류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 1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가 피고 류BB과 2년 이상 교제하며 수시로 2012. 8.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류B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김CC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류BB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피고 김CC가 원고에게 피고 류BB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보내는 등 간통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는 피고 류BB과 2010. 5.경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되기는 하였으나 2012. 5.경까지 피고 류B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였고, 2012. 5.경 이후로는 연인관계를 정리하여 그와 성교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 김CC를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원고와 피고 류BB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4차례 간통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류BB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류BB은 이 사건에서 2년 전부터 2012. 8.경까지 피고 김CC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 류CC는 2012. 2.

경부터 원고에게 전화를 거는 제스처를 취하여 피고 류BB을 협박하였고 2012. 7. 12. 경 피고 류BB과 대화하면서 "나랑 만나고 있는 동안에 조DD를 계속 만났어요. 그게 와이프한테 들켜서 와이프가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전화오면 받지 말아라 그렇게 시켜놓고..."라고 말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김CC는 피고 류B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알면서 위 각 일시경 피고 류BB과 성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2. 5.경까지 피고 류B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였다거나 2012. 5.경 이후로 피고 류BB과 성교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김CC의 주장처럼 위 피고가 2012. 5.경 이후로 피고 류BB과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 판결 등 참조), 피고 김CC가 피고 류B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와 2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낸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원고가 피고 류BB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김CC를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김CC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CC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류BB과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C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2. 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류BB에 대한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